

2019. 10.

**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
의정토론회 개최 결과**

- 일 시: 2019. 10. 18.(금), 15:00~17:30
- 장 소: 충청남도의회 의회동 소회의실(112호)
- 참 석: 80명(도민, 대안교육기관, 관계공무원 등)
- 주 제: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



충청남도의회
(문화복지위원회)

목 차

I. 총 평	1
II. 주요 논의내용	2
① 주제발표(1인)	2
② 지정토론(4인)	3
③ 청중토론(3인)	5
III. 토론회 결론	7
IV. 후속조치(행정·협조사항)	7

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「의정토론회」 개최 결과

❖ 날로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 환경조성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대안교육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함.

⇒ 주요 논의·제언내용을 분석하고,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코자 함.

《 행 사 개 요 》

- 일시·장소: 2019. 10. 18.(금), 15:00~17:30 / 충청남도의회 의회동 소회의실(112호)
- 참 석: 80명(도민, 대안교육기관, 관계공무원 등)
- 주 제: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

I 총 평

○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접근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로

- 참석자들은 공교육기관에 투입되는 비용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과 최소한의 교육 받을 권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토론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
- 토론자로 참여한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대안교육기관 교육지원의 접근을 청소년복지와 인간의 기본권,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활성화 방안 제안
-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졸업생은 본인의 사례를 통해 중졸임에도 지역 청년조합에서 대표로 활동하며 대안교육기관의 장점과 문제점 도출

1 주제발표

<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>

- ‘교육지원’은 학교를 복귀를 전제로 지원할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처한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함.
- 서울시는 2001년부터 ‘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터’로부터 탈학교 청소년 지원정책 실시
- 경기도가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 이에 따라 타 시·도도 조금씩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
- 다른 시·도도 계속적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음.
- 대안교육기관 활성화 방안 7가지 제시
 - 1) 교육은 하나의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다.
 - 교육부의 학교 밖 지원은 학업중단예방과 학교복귀에 중점
 -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은 현재 청소년의 처한 상황에서 지원이 맞다고 봄.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하고, 직업을 갖고,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
 - 2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핵심
 -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,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, 충남에서 금산군이 군 조례를 통해 급식비를 올해부터 지원함.
 - 3)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지원 필요
 - 4) 교육청사무가 아닌 청소년 복지에 대한 사무로 봐야 함.
 - 5) 대안교육기관 운영비, 인건비 지원 절실
 - 6)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필요
 - 7) 대안교육기관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군이 조례가 필요한가라는 의견이 있음. 그러나 각 시·도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.

② 지정토론 (4인)

① 허창수(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)

- 현재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, 인권, 평화를 갈망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.
- 교육 혁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변화의 시작은 보편적으로 대안 교육 운동으로 불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보고 있으며,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확산되었음.
 - 교육은 현재 패러다임 이동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 - 자유학기제, 혁신학교와 같이 창의·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
- 교육의 경계로 편협한 교육개념을 탈피하고 학령기 청년들의 기본적인 인권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본권으로 교육의 개념을 접근해야 함.
 - 삶의 질을 요구하는 행복추구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모두의 권리
 - 교육도 행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공적 영역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기능임.

② 박현수(별무리학교 학교장)

-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음. 본인의 특기 적성을 살리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오는 학생들에게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.
- 학교 폭력과 자살이 늘어나는 학생들...학교교육은 이미 붕괴 되고 있다고 봄.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해결을 위한 계기가 대안학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
- 대안교육기관이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 있음.
- 부모들이 왜 돈을 지급하면서도 대안학교를 보내는지 고민할 필요 있음.
 -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안교육기관이 하고 있음.

③ 김민수(꽃피는학교<(사)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> 대표이사)

- 교육의 의미를 학교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은 범위로 봐야함.
- ‘공교육을 하는 학교만이 교육의 표준인가?’ 제도와 권한만을 앞세우고 있는 동안 소외된 영역의 보편교육과 가치실현은 대안교육기관이 하고 있었던 것
- 규정보완을 통해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학습자 및 보호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필요
- ‘교육기본법’ 제2조의 교육이념과 보편교육의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의 선택에 대해 재정적 지원책 마련 촉구
-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지역차원의 지원과 협력 필요
- 대안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의 교육 확대 필요
 -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교사들의 교류로 각자 서있는 위치는 다르지만, 서로 상호 울림의 기회 제공
- 교육은 공동의 몫
 - 더딘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지역과 현장의 토대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먼저 나서야 함.

④ 조혁민(금산간디학교 졸업생)

- 대안학교를 통한 공동체, 책임감, 다양한 교육 공유
- 중졸임에도 지역의 청년조합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.
- 대안교육기관의 예산이 없어 어려움이 많음.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 어필
- 대안학교를 나오다보니 나라가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청년지원사업 등에 참여 불가능에 대한 아쉬움 호소

3 청중토론

[질의: 청중 1]

- 충남에 있는 대안학교가 현재 40개임.
- 비율로 봤을 때 충남이 가장 높고 신생 탄생비율도 높음.
- 충남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음.

[질의: 청중 2(서산꿈의학교 교사)]

- 이곳에 오면서 ‘과연 조례가 가능할까’ 의문이 있었음.
- 충남이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다보니 외지에서 많은 아이들이 충남의 대안학교로 오고 있음.
-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법에서 의무교육의 진짜의미가 무엇인가?
 - 강제교육인가? 헌법 제31조에서 보호자에 대한 의무조항인가?

[답변 :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]

- 국민의 4대 의무중 교육의 의무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을 받을 의무
- 그러나 헌법(제31조2항)에서의 교육은 의무가 아닌 보호자가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꼭 학교 형태는 아님.
-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꾼 것은 초등교육법 임.

[답변 : 김민수 꽃피는학교 대표이사]

- 애초에는 의무로 학교를 보내야 한대로 시작
- 최근의 의무교육이 갖는 의미는 보호자가 자녀를 교육을 받게 할 의무로써 이것은 부모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
- 그렇다면 당사자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을 받게 할 의무에 대해 생각해야 함.

[질의: 청중 3(대안학교 학생 학부모)]

- 조례 제정을 위해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함.
- 법률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참석해 보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.

[답변 : 여운영 문화복지위원회 의원]

- 현재 두 가지 조례 제·개정 추진중에 있음.
- 이미 충남에는 ‘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’가 있으나 시대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고,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조례로 빼서 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음.
- 이 두 개의 조례는 동시에 가야함. 어느 하나만 갈수 없다고 생각함.
- 현재 반대 의견이 있기도 함.
- 또한 집행부에서 부담을 갖고 있음.
- 그렇기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라고 격려 많이 해주면 가능하다고 봄.
- 격려하고 많이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도 힘내서 하겠음.
- 의회에서도 적극적 노력하겠고,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함.
- 서울시만 대안교육기관관련 조례가 통과됐고, 그만큼 서울시 집행부가 앞장섰기에 가능.
- 조례는 법적 위임사항이 없더라도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능함.
-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더 만들자.
- 학부모님들은 조례 만드는 것은 의회에 맡기고 집행부 직원들 힘내라고 응원해주시길 당부.

III

토론회 결론

<과 제>

1. 공교육을 떠나는 청소년을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함.
2. 교육은 당사자 관점에서 인권과 청소년 복지로 접근해야함.
3. 따라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
4.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활성화 조례 제정 필요

<결 론>

- 두 가지 조례가 제·개정 되도록 의회에서 적극적 노력하겠음.
-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집행부에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길 당부

IV

후속조치(행정 · 협조사항)

- 토론된 내용(의견)이 도·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
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
 - 충청남도(여성가족정책관, 교육법무담당관)
 - 충청남도의회(입법예산정책담당관)